

2023년도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2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김원,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1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32건(안건번호 제2023-43907호~453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43907호~43917호(순번 1번~11번)는 소프트웨어의 제품키를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건으로, 게시자의 각 제품키 판매행위가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이의를 신청한 게시자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점, 각 게시물에 의해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43918호~43951호(순번 12번~45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43952호~43958호(순번 46번~52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43959호(순번 53번)는 만화의 리뷰, 설명 등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43960호~43962호(순번 54번~56번)는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51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및 안전번호 제2023-43963호~44545호(순번 57번~63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52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3-11281호~1180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52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1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제

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14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1번은 시정권고를 받은 OSP가 이의신청한 건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사안임. 총 11개 게시물이임.

제2023-89회 제1분과위원회(2023. 4. 24. 개최)는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등을 판매중인 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결 의견임.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태양에 대한 상세한 연구·검토 및 토론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순번 1번~11번은 게시자의 각 제품키 판매행위가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이의를 신청한 게시자의 정품 판매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점, 각 게시물에 의해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제품키 판매 사안 관련 해당 사례들을 정리하여 추후 심도있는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A, D, E 위원: 동의함. 심의안건에 대해 가결 의견임.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번 내지 4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96개 게시물임.

(순번 12번 및 3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 해당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순번 12번~45번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번~4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

번~5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0개 게시물임.

(순번 5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 E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6번~5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만화를 소개 또는 리뷰하는 블로그 게시물 총 4건임.
(순번 5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감상,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며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 게시물의 내용은 특정 부분(특정 캐릭터,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감상을 서술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전체를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화의 일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화에 대해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인용

으로서 공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적어도 원저작물 자체를 대체하고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53번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3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4번~56번은 실명 1명, 익명 2명의 민원인들이 신고한 건임.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3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54번~56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4번~56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7번~143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01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영화, 방송,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57번~1432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 및 순번 57번~639번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7번~143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및 순번 57번~63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43907호~43917호(순번 1번~1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43918호~43951호(순번 12번~4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020호~21051호(순번 46번~5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43959호(순번 53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43960호~43962호(순번 54번~5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43963호~45338호(순번 57번~1,43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 및 안전번호 제2023-43963호~44545호(순번 57번~639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1281호~11805호(순번 1번~525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31.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최진원